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참조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36
----------	------

발의년월일 : 2007. 8. .

발 의 자 : 남용삼 의원 등 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윤리강령 마련 및 준수 규정(안 제3조~제4조)
-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등 의무사항 및 각종 금지사항 규정(안 제5조~제12조)
- 성실한 의회 출석(안 제13조)
- 징계심사 절차(안 제14조)

☐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4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